

# 수공 정밀안전점검·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시 기계·전기설비 대가반영 건의 검토서

## 1. 수공 용역 추진현황

### □ 일반현황

-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댐 및 광역상수도 등은 1,2종 시설물로 구분 지정되어 안전등급 정도 등에 따라 개략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5년, 정밀안전점검은 2년 주기로 실시토록 되어있어,
- 수공은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설계지침 등에서 정한 진단주기, 진단방법 등을 근간으로 자체 제정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진단 과업지시서 표준안을 적용하여 설계내역을 작성하고,
- 분야별 과업비중은 댐은 토목 80%, 기계·전기 20% 내외이며, 수도는 토목 80%, 건축 10%, 기계·전기 10% 내외로 관할권역 안전관리 부서에서 발주하고 안전진단업체 수행

### □ 계약형태

-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는 1종 시설물로 대통령령 지정 150여개에 포함되어 시설안전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시행
- 그 외 2종시설인 용수전용 댐, 공업 및 지방상수도는 경쟁 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되,
- PQ와 입찰가격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, 개략 10억 미만은 PQ만 적용하고 10억 이상은 2차 평가(SOQ) 시행

### □ 기계·전기설비 수행여건

- 수행범위는 기본과업으로서 외관조사(설비 작동유무), 선택과업으로서 조사 및 시험 등은 필요시 추가로 설계 반영
- 수행방법은 대부분의 안전진단업체가 수행능력 미비로 기계·전기설비 수행 가능업체에 하도급 시행
  - ☞(시안법 시행령 제22조1항)기계·전기설비는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로 분류
- 하도급은 주로 수기주, 부경, 와텍, 이베스트, 산업안전협회 등에서 수행

## 2. 기계·전기설비 대가 미반영(애로사항)

-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설계지침과 수공 과업지시서상에 기본과업으로 외관 조사와 선택과업으로 조사 및 시험 등을 수행토록 되어 있으나,
  - 설계내역서상 해당항목의 대가는 별도로 계상되고 있지 않아 하도금액 산정근거가 부족하여,
  - 계약자와 하도급사간에 혼선과 마찰이 지속 발생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과 이에 따른 진단품질 확보에 어려움 있는 실정
- ☞ 농어촌공사 관리의 유사시설물인 저수지, 방조제 및 양배수장은 해당 항목의 대가산정 내부기준을 두고 설계에 반영 한 후 하도급으로 시행

## 3. 기계·전기설비 대가반영 필요성

### □ 제도적 취지 충실 이행

- (시안법 시행령 제10조3항) 복합된 시설물 구조안전 관련 전기설비, 기계설비 또는 계측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경우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자에게 진단을 실시하게 해야 하고, ☞ **댐 및 수도는 복합시설물 해당**
-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설계지침과 수공 과업지시서 등에서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포함되어 있고, 최근 성능평가 도입으로 그 중요도가 증대

### □ 설비 안전성 강화 추세

- 시설물안전 개념이 재난, 단수 및 수질사고 등 포괄적 안전으로 확대
- 수도물 공급중단사고 발생요인으로 펌프장, 수변전설비 등 상당 비중 차지
- 댐의 홍수 조절 및 방류 시 수문설비가 매우 중요 역할

### □ 대가반영 기대효과

- 타 기관 유사 시설물과 대가반영 유무 차이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
-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불일치에 따른 수행 적정성 문제 개선
- 하도금액 산정근거 부족에 따른 상충이전 해소와 진단품질 제고

## 4. 요구건의(안)

### □ 공사 자체 대가반영 방안 마련, 시행

- 댐 및 하구둑, 취·정수 및 가압장 등 시설물별 기계·전기설비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에 대가가 반영되어 '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 마련

### □ 국토부 시안법 개정 시 적극 의견 개진

- 댐 및 수도시설물은 복합시설물로서 시설물 안전진단의 본질적 취지와 현

장 여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